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26
----------	------------

제안년월일 : 2024년 6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상실 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주체를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포괄 명시함으로써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사업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 2. 주요 골자

- “. 이하 같다” 삭제(안 제24조제2항제9호의2)
-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지원 주체 수정(안 제25조제4항)

##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9의2.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의 예방 및 완화 지원

안 제25조제4항 중 “시장은 구청장이”를 “시장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4조(동물복지지원 센터의 설치·운영)</p> <p>① (생 략)</p> <p>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9. (생 략)</p> <p>&lt;신 설&gt;</p>	<p>제24조(동물복지지원 센터의 설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u>9의2.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이 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방 및 완화 지원</u></p> <p>10. ~ 12 (원안과 같음)</p>	<p>제24조(동물복지지원 센터의 설치·운영)</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p> <p>1. ~ 9. (개정안과 같음)</p> <p><u>9의2.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이 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의 예방 및 완화 지원</u></p> <p>10. ~ 12. (개정안과 같음)</p>

제25조(동물보호업무  
의 지원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5조(동물보호업무  
의 지원 등)(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구청장이  
시민의 반려동물 상  
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동물보호업무  
의 지원 등)(개정안  
과 같음)

④ 시장 또는 구청장  
은 -----  
-----  
-----  
-----  
-----  
-----  
-----  
-----  
-----.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 또는 생명윤리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7조의3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24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의 예방 및 완화 지원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생략)</p> <p>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p>	<p>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

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  
는 사람

<신 설>

6.·7. (생 략)

③ ~ ⑭ (생 략)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  
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 7. (생 략)

<신 설>

제24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① (생 략)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9. (생 략)

<신 설>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  
지 또는 생명윤리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7. (현행과 같음)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24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반려  
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  
물의 죽음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10. ~ 12. (생 략)

③ (생 략)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의 예방 및 완화  
지원

10.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의 반  
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  
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  
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